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
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공공용지 개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고 했으나, 공용수용대상 여부 고시는 토지수용 단계에서 고시하게 되는 바, 순서가 맞지 않아 개념에 이를 삭제하여 과세면제 정당성 여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공용지 개념에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한것을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안 제2조)

나. 세정사항 적용을 199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하기로 함(안 부칙 제2 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
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다음과같이개정한다.

第2條(불균일과세)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p>제2조(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 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조(불균일과세)(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p>